

13 ~~朝鮮市街地計劃~~ (南)係法規集  
朝鮮市街地計劃 관련 법규  
(조선 시가지 계획 관련 법규 집)

1945년에 출판한 도시 계획 관련 법령집  
이로써 책의 크기는 130mm x 8.5cm 528쪽이다  
수록된 법령은 ① 조선 시가지 계획령 문  
록하여 ② 조선 토지 개량령 ③ 지세령 (地  
稅令) ④ 토지 수용령 ⑤ 행정 집행령 및  
⑥ 조선 보통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등  
6개의 법과 이들을 6개 법의 시행규칙

# 續

(지국의 대통령 임 또는 각령) 과 • 기상 참 고 또

• 목욕탕 영안 <sup>취체</sup> <sup>(인물)</sup> 취체 <sup>취체</sup> 취체

• 은사점 영업 취체 취체 • 창기 (唱妓) 취체

취체 • 원동기 (原動機) 취체 취체 • 인화기

물 취체 취체 • 농도 화기류 취체 취체 • 묘리

화장 장 맛 화장 취체 취체 • 사람 병원 취체

취체 • 도산장 취체 • 도산 취체 취체 맛 • 정

찬범 취범 취체 등 20개의 취체가 수록되

어 있다

~~조선~~ <sup>1920</sup> 김집 시대 ② 최고 통치 기관인 조선

총독부는 대만총독부와는 그 격이 달랐  
 다. 첫째 조선총독은 천황(天皇)의 직속이  
 었다. 내각총리 대신 밑에 있는 대신(大臣 =  
 장관)보다 격이 위였다. 둘째 조선총독은  
 육군대장으로 본하고 대만총독은 해군  
 장성으로 임명했다. 셋째 조선총독에게  
 는 제령권(制令權) 즉 입법권을 부여했  
 으나 대만총독에게는 입법권을 주지  
 않았다. 넷째 조선총독에게는 예산편  
 성권을 주었는데 대만총독은 예산편

심권도 있었지만 때를히 조선총독부의 국  
 장은 일본서 대신(장관)을 지낸 사람도  
 있었는데 하면 대부분 일본이 현지사  
 (農知事 = 우치의 지사)를 지낸 사람들이었다  
 조선총독은 스스로 법률제정 권한이  
 있었기 때문에 통치에 필요한 많은 법률  
 제정했는데 그 명칭은령(令)으로 표현했  
 다 조선도령령 조선 하천령 조선 시가지  
 계획령 토지 수용령 또는 조선 민사령 조  
 선 형사령 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까

이른바 시 제정하는 법에는 법(法) 자를 빼치  
고 조선의 총독이 만든 법은 이를 령(令)이라  
했다. 1910년대 까지 우리 나라 신문 등은  
<조선 수용 령 반동> 하는 사어로 보도해  
왔다.

조선시가지 제화령(조선제화법)은 1934  
년에 제정했는데 이는 북조선의 라진  
(羅津) 개항의 간증성 때문에 만든 법이  
라 해는 리나친 마당이 아니라 이 법이  
처음 적용한 도시는 나진이었고

서 목은 2번다 2번후인 1936년 부터  
 도시 계획 법이 적용 되었다 이 법에 대  
 국 목은 평양 함흥 등 주요 도청 소재  
 지는 1937년 부터 이 <sup>법</sup>법이 적용 되었다  
 이 법은 지금의 도시 계획 법과 건축 법 등  
 관련 법이 있고 <sup>이 법에 포함되지 않는</sup> 도시 계획 위원회를 두는  
 등 상임회 민주적인 법이 었다 향후 있다  
 그러나 이 법은 해방이 후 <sup>계속 사용해 오다</sup> 1962년  
 1962년 혁명 정부에 의해 원래 법령 정비 때  
 무효가 되 도시 계획 법으로 바뀌었다

No.